



쌀 협상 결과 이면 합의에 따른 문제점

정부는 지난해 말 WTO 사무국에 통보한 이행계획서 수정안에 대한 144개 회원국의 검증이 6일 끝났으며 12일 WTO 사무총장이 이를 인증해 협상이 마무리됐다고 밝혔다. 그러나 기존의 쌀 협상 잠정 결과 외에 협상국들과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드러나 농업계 및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.

이에 이번호에서는 쌀 협상 결과 현황 및 이면합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고 쌀 협상결과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.

1. 쌀 협상 결과 현황

-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 연장하며 이행 5년차인 2009년도에 다자간 이행상황 중간 점검을 실시
- 05~14년 10년간 TRQ를 현행(205,228톤)에서 408,700톤(7.96%)로 균등 증량
- 국영무역방식을 유지하되, TRQ의 10%~30%(6

차년도 이후)까지 밥쌀용 시판 단계적으로 확대

2. 쌀 협상 이면합의 현황

- 중국 : 양벚, 사과, 배 등 중국 관심품목의 식물검역상 수입위험평가 절차의 신속한 추진, 농수산물 조정관세 품목 축소 또는 관세 인하 등을 위해 양국이 노력
- 아르헨티나 : 동·식물 검역 관련 절차가 진행중인 닭고기 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등이 원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전문가 간 협의 추진
- 캐나다 :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사료용 완두콩, 유채유 관세 인하 추진
- 인도·이집트 : MMA수입과 별개로 식량 원조 쌀 구매 구매가 있을 경우 인도 및 이집트 쌀 우선 구매

3. 문제점

▶ 이면계약에 대한 쟁점

1) 정부의 입장

- 정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쌀 협상 결과를 발표할 당시 '쌀 협상 이행계획서 수정안 외에 국가·쟁점별로 문서 형태의 별도 합의가 있을 예정'이라고 분명히 밝혔으며 협상국에 양보도 말도 안된다는 입장
- 또한 이번에 체결된 양자 부가 합의는 쌀 협상과 별개 사안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임

2) 한농연 입장

- 지난해 발표 당시 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부가적 사항이 별 문제가 없다는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주요 쟁점 사항을 공개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음
- 그러나 두 안건(쌀 협상, 부가적 합의 사항) 논의가 쌀 협상과 병행돼 진행된 상태에서 쌀 협상과 양자 부가합의가 별개 사안이라는 것은 어불설성임
- 실제로 부가합의사항에서는 캐나다와 사료용 완두콩·유채유 관세 인하를 추진하고 아르헨티나와는 닭고기·오렌지 등에 대한 수입위험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우리나라가 대폭 양보하는 내용들임

▶ 수입위험평가에 대한 쟁점

1) 정부의 입장

- 정부는 어느 나라가 어떤 농산물에 대해 수입위험평가를 요청하면 접수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현재도 중국을 포함한 30개국으로부터 117개 농산물에 대한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접수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밝힘

2) 한농연 입장

- 현재 중국의 과수(사과, 배)는 과실 파리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수입이 금지되고 있음. 이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입위험평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중국의 과수(사과, 배)를 수입할 가능성이 높아짐
-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업 수입국인 중국과 농수산물 조정관세품목 축소 또는 관세 인하 등을 위해 양국이 노력한다고 합의하여 향후 농산물 교역 시 관세 인하의 명분을 만들어줌
- 수입위험평가는 제3국에서 요청할 경우 국내 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(늦게) 진행할 수 있는데 신속 추진하다는 것을 명문화하여 수입 개방을 허용하게 된다면 국내대책을 세울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음

※ 특히 3단계 협상 중인 양벧(체리) 검역 이후 중국이 '우선 순위 선정 권한'을 갖고 있어 곧바로 수익성이 높은 사과·배 협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큼

▣ 중국이 수입위해성평가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구한 이유

1) 정부의 입장

- 정부는 수입위해성평가 절차 자체가 곧 수입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

2) 한농연의 입장

- 그러나 중국 등 협상국에서 자국의 이익이 없었다면 수입위해성평가 절차를 명문화하자고 주장하지 않았을 것임. 이에 중국 등이 수입위험평가 삽입을 주장한 것은 현재 수입위험평가 요청이 많은 국가들에게 접수 된 상황이고 평가절차가 오래 걸리므로(짧게는 3년 길게는 5년이 걸림) 자국 농산물의 신속한 위해성 평가를 받기 위해 부가합의를 주장한 것으로 판단 됨
- 따라서 정부의 주장대로 부가사항 합의는 전혀 문제가 없고 협상국들에게 양보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음



4. 한농연 요구사항

- '이면합의'와 관련 이번 쌀 협상에 임했던 통상관련 책임자를 엄중 문책해야 함
- 이번 쌀 협상은 쌀 이외 사과·배, 쇠고기, 가금육, 오렌지 등 여타 품목까지 수입 가능성을 열어 준 것이기 때문에 국회는 즉각 쌀 협상과 이면합의에 대한 국정조사를 통해 쌀 협상을 낱알이 검증해야 함



○ 4·30 선거 전에 ‘쌀 산업 발전 및 과수농가 대책 특별기구’를 구성하고 하반기 발생할 ‘쌀 대란’을 미리 점검하고 과수분야 대책을 수립해야 함

○ 향후 FTA·WTO협상에서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영향분석, 협상대상국선정, 협상전략수립, 협상안의 심의·의결, 국내대책 마련 시 농민 참여권을 100% 보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강화해야 함

5) 쌀 협상 국회비준 및 이면합의에 따른 한농연 대응방안

- 쌀 협상 평가(이면합의) 및 국내 대책 관련 토론회 개최
- 쌀 협상 관련 지역 선전 활동
- 각 시·군청 및 의회에서 쌀 산업 관련 대책 촉구 건의문 채택 활동
- 국회의원 소환 운동
- 국회비준 반대 및 국내 대책 관련 각도별 촉구대회 개최
- 국회비준 반대 릴레이 농민대회 개최
-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근조 쌀 보내기 운동 전개